

함께 나누고 함께 누려요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실무안내



2022. 1.



CONTENTS

개정 내용 04

건설현장 사업장 및 일용근로자 업무처리기준 06

- 1. 건설 일용근로자 정의 06
- 2. 사업장 적용 06
- 3. 사업장가입자 적용 08
- 4. 기준소득월액 결정 18
- 5. 보험료 납부 및 확인 19

일반 일용근로자 업무처리기준 21

- 1. 일반 일용근로자 정의 21
- 2. 사업장 적용 21
- 3. 사업장가입자 적용 21
- 4. 기준소득월액 결정 25

	단시간 근로자 업무처리기준	26
<hr/>		
	1. 근로시간에 따른 사업장가입자 적용	26
	2. 소득금액에 따른 사업장가입자 적용	28
	인터넷 신고	31
<hr/>		
	1. 국민연금 웹 EDI 이용하기	31
	2. 사회보험 EDI서비스 이용하기	34
	3.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 이용하기	36
	4. 4대사회보험 QR신고와 QCR 인식시스템 이용하기	40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45
<hr/>		
	1.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45
	2. 실업크레딧제도	52
	서식 「보험료일괄경정고지·전자고지 신청서」	53
<hr/>		



개정 내용



1. 개정 배경 및 내용

- ▶ (건설)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의 현행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이 **근로일수와 근로시간**만을 고려하고 있어,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간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고용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 ▶ **산업 구조 변화와 고용 형태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연금 가입 적용기준 개선 필요

- 종전에는 (건설)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에 **근로기간(근로 개월·일수·시간)**만을 고려하여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확인
- 근로기간 이외에 「**소득 기준**」을 추가하여 근로기간이 조건에 미달하여도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근로자이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됨

* 「국민연금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으로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공표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前)

- ☑ **근로기간만으로 가입여부 판단**
- ✓ **건설 일용근로자** :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 시에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 **일반 일용근로자** :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에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 **단시간 근로자** : 1개월 이상, 월 소정 시간 60시간 이상 근로 시에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

개정 후(後)

- ☑ **근로기간 또는 소득기준으로 가입여부 판단**
- ✓ **건설 일용근로자** :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 가입**
- ✓ **일반 일용근로자** :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 가입**
- ✓ **단시간 근로자** : 1개월 이상, 월 소정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 가입**

2.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법 시행령 제2조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다만,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각 목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나. 가목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4.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라.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3. 적용 시기 등

- 시행일자 : 2022. 1. 1.

- (소득 기준 적용 시점)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거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의 소득 기준 적용은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부칙 <제31844호, 2021.6.29.>

- **2022.1.1. 이전부터 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이 근로 일수 월 8일 미만, 근로시간 월 60시간 미만이지만 월 소득이 고시 금액 이상인 경우 취득일은 2022.1.1.로 적용**

- 종전 근로일수 경과조치 규정*은 2020.8.1.로 효력상실

* 2018.8.1. 전에 발주자가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입찰공고를 시작한 공사 현장에 근로하는 건설 일용근로자는 종전기준을 **2020.7.31.까지 근무 일수 월 20일 이상**으로 적용

※ (참고)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가입 소급 적용으로 인하여 경과규정이 인정되고 있음



건설현장 사업장 및 일용근로자 업무처리기준



1. 건설 일용 근로자 정의

- 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사업장에 사용되고 직접노무비 대상**에 해당하는 일용근로자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의 사업장
-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업장
-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사업장
- (5)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의 사업장
-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의 사업장

직접노무비 대상

- ▶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 ▶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현장인 명부를 통하여 확인

간접노무비 대상

- ▶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 2-1
- ▶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 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 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

2. 사업장 적용

가. 건설 현장별로 적용

- 본사 및 상용근로자와 구분하여, **건설 현장의 건설일용직만**을 대상으로 사업장 분리 적용
 - 분리 적용 사업장으로 등록 시 **가입자가 없어도 사업장으로 적용하고 공사계약 기간 동안 사업장 유지**
- 원수급인, 하수급인 사업장별 **건설 현장 단위로 사업장 분리 적용**
- 사용자와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본사 사업장의 사업장가입자로 취득 가능**
 - 이 경우, 직접노무비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사의 상용근로자나 일반 일용근로자**로서 가입 여부 판단

나. 건설공사(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적용

- 단, **최초 공사(계약) 기간은 1개월 미만**이나, 기간 연장 및 갱신계약 등으로 **실제 공사 기간이 1개월 이상** 되는 건설 현장 포함

다. 건설공사의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여부와는 관계없이 적용

-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는 건설 현장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 방안의 일종일 뿐이므로 사업장의 **사후정산제도 해당 여부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적용** 여부와는 무관함

* 건설 현장의 4대 보험료 중 **연금·건강·장기 요양** 납부영수증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기성금 지급 시 해당 납부보험료를 수령**하고, 공사 완료 시 지급금액과 당초(도급금액) 산출 명세서상 금액을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제도

라. 사업장 신고방법 및 절차

- ▶ **(원칙)** EDI로 신고
 - ▶ **(예외*)** 서면, 우편, 팩스,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로 신고
- * EDI 시스템 이용 불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사업장 적용(등록) 신고
 - **(필수 구비서류)**
 - ①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 ② 보험료 일괄경정고지·전자고지 신청서(서식 1)
 - ③ **원도급 또는 하도급 공사계약서***
 - * 공사계약서는 **사업장 성립일자, 공사기간 등** 확인용으로 반드시 제출
 - **(신고 구분 코드) “4:당연적용-건설”**로 등록

사업장 적용(등록) 유의사항

- 신고구분코드 “4.당연적용-건설”을 선택한 경우 **건설 사업기간, 최초 발주형태, 해당 연월일자**를 빠짐없이 등록
- 사업장 등록방법
 - (1) 사업장명칭 : **회사명칭+현장**[예: (주) 00건설 00동00공사현장]
 - (2) 사업장주소 : 공사현장 주소로 하되, 본점 주소지로 송달지 신청 가능
 - (3)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본점사업장의 사업자(법인)등록번호**로 등록

사업장 적용(등록) 유의사항

- (4) 사용자 : **본점사업장의 사용자**로 등록
* 가입대상구분 “07-분리적용사업장 사용자”로 등록
- (5) 본점 사업장 내역 입력 : 본점 사업장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 본점 사업장을 등록 후 건설현장 사업장을 분리등록

● 사업장 내용변경(정정)

-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사업장 등록 등에 변경(정정) 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
※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변경된 공사계약서」 첨부(방문, 우편, FAX 가능)하고, 계약서가 없을 경우, 공문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입증자료를 사업장으로부터 징구

● 사업장 탈퇴

- **(탈퇴일)** 공사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
※ 다만, **공사기간 종료 후에도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최종 근로한 날의 다음날**로 탈퇴
- **(탈퇴 사유코드)** “09-사업종료”로 등록
- 분리적용 해지절차 없이 탈퇴 처리

3. 사업장가입자 적용

가. 가입대상

- **(근로일수·소득금액별 판단)** 공사 현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22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가입 대상임
*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에 따른 금액으로 매년 변동될 수 있음

① **(1개월 이상 근로)** 최초 근로(고용)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근로하거나, **그날 이후까지** 근로한 경우

☑ **(그날 이후까지 근로한 경우)**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 미만 근로하였더라도 그 기간에 8일 이상 근로하였고 **연속하는 월***에 하루라도 근무하면 가입 대상임

* 「연속하는 월」의 정의

- ① 동월 초일부터 말일 이전까지로 1개월 미만 근무하였으나 그 기간 동안 8일 이상 근무하였고 다음 달에 근로를 1일이라도 하는 경우, 다음 달을 연속하는 월로 간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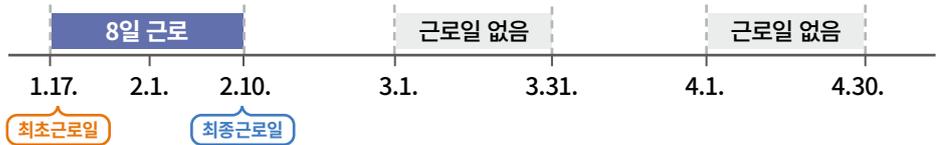
예시) 근로자 A가 2021.7.1.부터 7. 23.까지 甲 사업장에서 8일 이상 근로하였고, 8. 10.부터 8. 13.까지 2일을 근로한 경우, 8월을 연속하는 월로 봄

< 또는 >

- ② 2개월에 걸쳐 1개월 미만 근로하였지만, 근로일수는 8일 이상이고, 그 기간의 최종 근로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에 근로를 1일이라도 하는 경우, 그 다음 달을 연속하는 월로 간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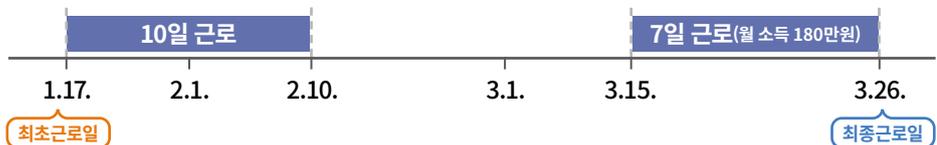
예시) 근로자 A가 2021.7.10.부터 8.5.까지 甲 사업장에서 8일 이상 근로하였고, 9. 15.부터 9. 20.까지 4일을 근로한 경우, 9월을 연속하는 월로 봄

사례 A : 연속하는 월에 근로가 없는 경우



- ▶ 가입 대상 아님, 근무 기간이 최초 근로일(1.17.)로부터 1개월 미만(1.17.~2.10.)으로 최종 근로일이 2. 10.으로 확인되고 다음 달에 근로일이 없는 경우, 근무 일수는 8일 이상이나 가입 대상 아님
- ※ 1개월 미만으로 가입 대상 제외 시 소득금액 확인 불필요

사례 B : 연속하는 월에 근로가 있는 경우



취득일 : 1.17. 상실일 : 3.1. 또는 3.27.

- ① 1개월 미만 동안 10일을 근무하였지만 연속되는 월(3월)에 근무 일수가 발생하여 1개월 이상 근로한 것으로 보아 가입 대상으로 업무처리
- ② 이 경우, 최초 근로일(1.17.)로부터 1개월 동안 10일 근무하였다는 것으로 간주하고 취득일은 최초 근로일로 적용
- ③ 연속하는 월(3월)에 8일 미만 근로로 상실일은 최종 근로일이 속한 달의 초일로 적용(단, 사용자와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최종 근로일의 다음 날로 상실 가능)
- ※ “8일 미만” 근로인 경우, 소득금액 기준 판단 필요 (③ 220만원 이상의 소득” 참조)

② (월 8일 이상 근로) 최초 근로(고용)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근로하거나,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로 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사례 C : 1개월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근로

취득일 : 1.17. 상실일 : 2.17.

▶ 최초 근로일(1.17.)로부터 1개월 이상인 날(2.16.)까지 근무하였고 그 기간에 총 8일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가입 대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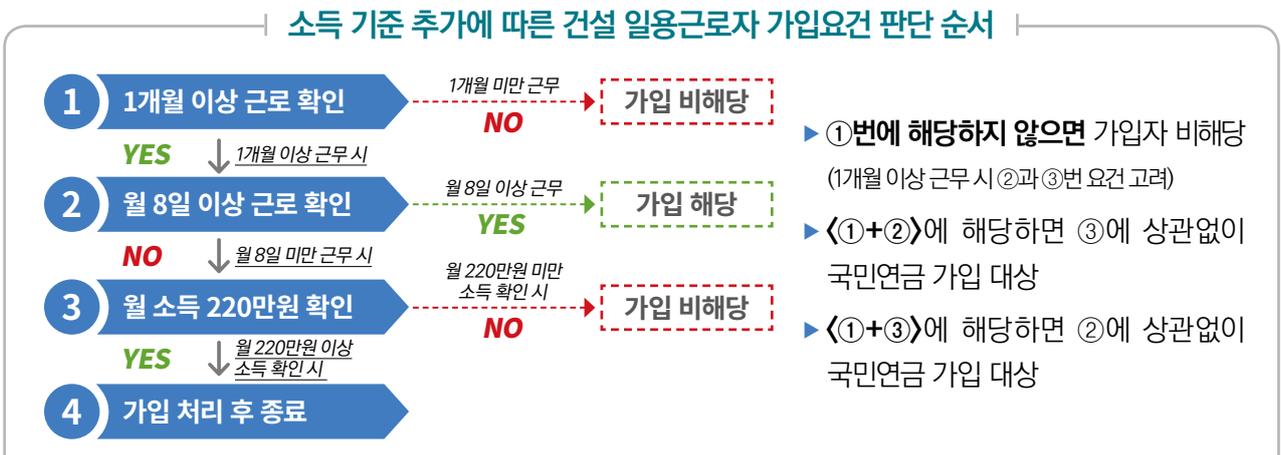
사례 D : 최초 근로일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일수가 8일 이상

취득일 : 2.1. 상실일 : 3.1.

▶ 최초 근로일(1.17.)로부터 1개월간(2.16.) 8일 미만으로 근로하였고 다음 달에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취득일은 최초 근로일의 다음 달 초일로 적용하고 상실일은 2월의 최종 근로일(2.28.)의 다음 날로 적용

※ 최초 근로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의 소득은 기준 이하로 가정

③ (220만 원 이상의 소득) 최초 근로(고용)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근로하면서 8일 미만 근로하였지만, 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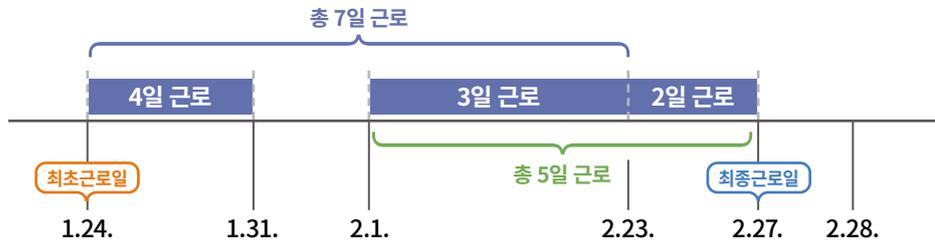
- 최초 근로(고용)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의 소득이 고시 금액 이상이거나 최초 근로일의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소득이 고시 금액 이상인 경우

소득금액 산정방식 예시*(최초 근로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의 소득)

* 연속 근로 월 소득의 전체 합산한 금액을 근로일수로 나눠 구해진 일 평균소득을 1개월 되는 날까지의 근로일수에 곱하여 계산

▶ 근로자 A가 사업장(가)에 1. 24.에 최초 근로하고 2. 27.에 최종 근로한 경우, A는 1.24.~2.23.까지 7일간 근로, 2.1.~2.27.까지 5일간 근로

→ A의 1월 소득 : 1,264,000원(4일 근로), 2월 소득 : 1,580,000원(5일 근로)



▶ A의 월 소득금액은 2,212,000원*으로 220만 원 이상의 월 소득자로서 가입 대상이며, 취득일은 1. 24.이고 상실일은 2. 28.임

〈A의 월 소득 금액 계산식〉

A의 월 소득 2,212,000원 = $\{(1,264,000\text{원}^1) + (1,580,000\text{원}^2)\} \div 9\text{일}^3 \times 7\text{일}^4$

- 1) 최초 근로일이 속한 달의 소득: A의 경우 1월 소득
- 2) 최종 근로일이 속한 달의 소득: A의 경우 2월 소득
- 3) 근로기간 동안 총 근무 일수: A의 경우 총 9일(4일(1월 근무 일수) + 5일(2월 근무 일수))
- 4) 최초 근로일로부터 1개월 간 근무 일수: A의 경우 1.24.부터 2.23.일까지 7일간 근로

- (근로일수·소득금액 합산 판단) 발주된 공사 현장 내에서 해당 건설업체가 다수의 공사계약이 있더라도 동일 건설 현장으로 보며, 소속 근로자는 근로일수 또는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가입 대상 여부를 판단
 - 「동일 건설현장의 다수 공사계약」의 해당여부는 <건설업종 하도급계약서> 등의 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 (근로·고용계약서 확인) 고용 기간, 근로일수, 소득 판단 기준
 - 근로계약서의 근로일수가 월 8일 이상이면 실제 근로기간·일수 불문하고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변경 전·후 비교

변경 전(前)

✓ 근로(고용)계약이 1개월 이상인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포함)

- 근로계약서의 근로일수가 월 8일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 실제 근로기간·일수 불문
- 근로계약서의 근로일수가 월 8일 미만이나 실제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근로(고용)계약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포함)

- 실제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변경 후(後)

✓ 근로(고용)계약이 1개월 이상인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포함)

- 근로계약서의 근로일수가 월 8일 이상이거나 월 소득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 실제 근로기간·일수, 월 소득금액 불문
- 근로계약서의 근로일수가 월 8일 미만이나 실제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월 8일 미만 근로하였지만, 월 소득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이상인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근로(고용)계약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포함)

- 실제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월 8일 미만 근로하였지만, 월 소득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이상인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나. 자격 취득 및 상실 시기

• 자격취득일

- ①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하거나 그 기간 동안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 ㄷ 최초 근로일
- ②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간 8일 미만 근로 및 그 기간 동안 소득이 220만 원 미만이었지만, 최초 근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인 경우 ㄷ 최초 근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1일)
- ③ 최초 근로일로부터 1개월간 월 8일 미만 근로하였으나, 그 기간 동안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 ㄷ 최초 근로일

• 자격상실일

- ① 자격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 최종 근로일이 속한 달에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그 기간 동안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 **쓰 최종 근로일의 다음 날**

- ②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 또는 그 기간 동안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이고,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미만 근로하면서 **월 소득이 220만 원 미만인 경우 쓰 최종 근로일의 다음 날**

※ 최초 근로일이 초일인 경우는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이 된 날의 다음 날로 상실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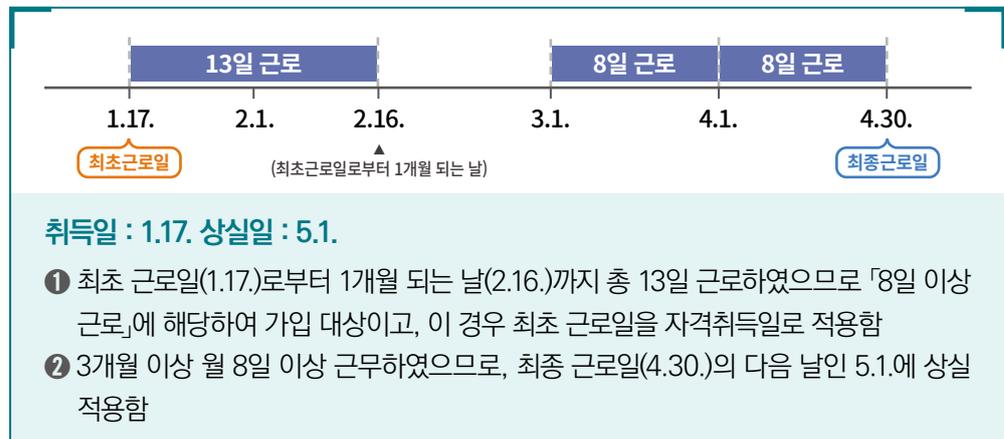
- ③ 자격 취득 후 연속해서 가입 후 최종 근로일 속한 달의 초일부터 말일까지 **월 8일 미만으로 근로하고 월 소득이 220만 원 미만인 경우 쓰 최종 근로일 속한 달의 초일(1일) 또는 최종 근로일의 다음 날***

* 사용자와 근로자가 희망하면 최종 근로일의 다음 날로 상실 가능하며, 희망여부 판단은 신고서 제출로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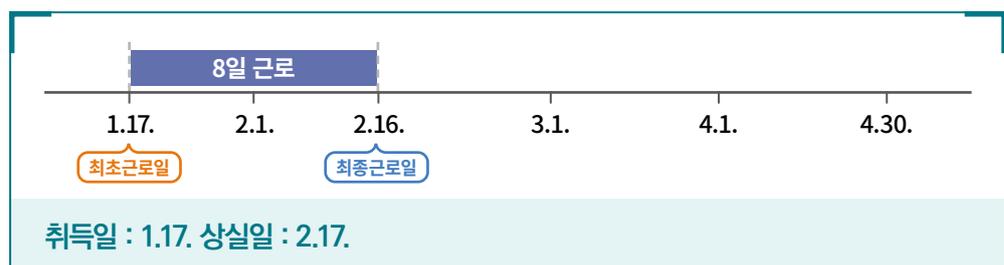
취득일 및 상실일 예시

자격취득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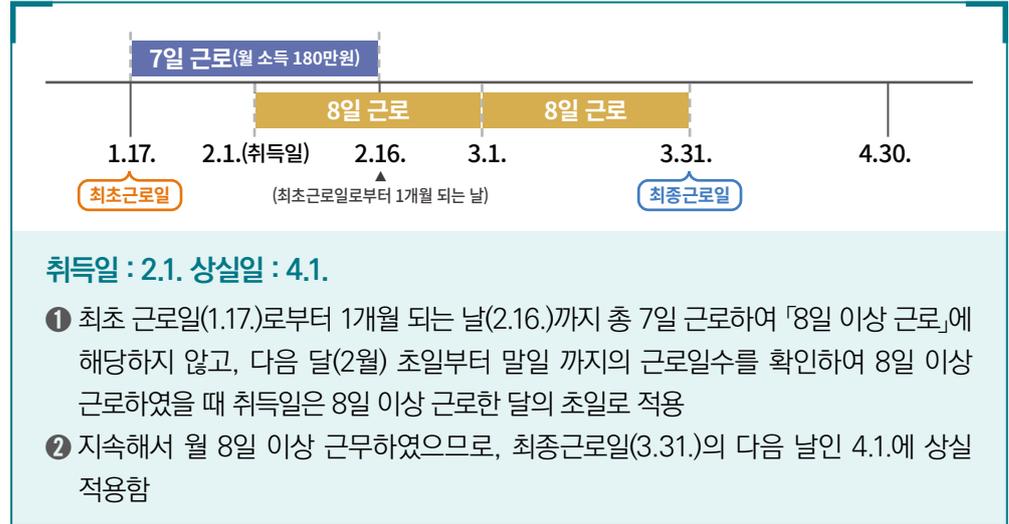
[사례 ①-1]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간 월 8일 이상 근로하고 그 이후도 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 **최초 근로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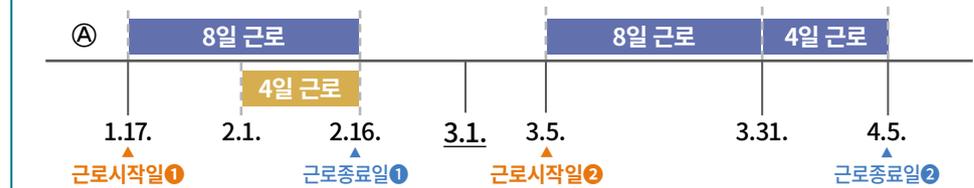
[사례 ①-2]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만 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 **최초 근로일**



[사례 ②] 최초 1개월간(전월)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고 그 기간 동안 월 소득도 220만 원 미만이며, 최초 근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 초일부터 말일까지 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 **최초 근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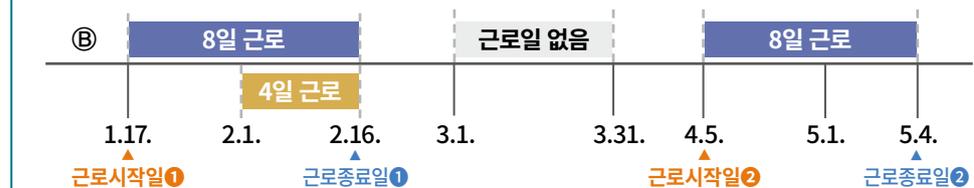


응용사례 (소득금액은 월 220만 원 미만으로 가정)



취득일 : 1.17. 상실일 : 2.17. 재취득일 : 3.1. 재상실일 : 4.1. 또는 4.6.*

- ▶ ①의 경우 상실 후 다시 취득하는 경우 상실여부와 상관없이 전월(2월)에 근로일수(8일 미만)가 있고 당월에 근로일수가 8일 이상 있는 경우, 당월 초일(3.1.)로 취득해야 함
- * 최종 근로일의 다음 날(4.6.)로 상실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희망 시 적용 가능



취득일 : 1.17. 상실일 : 2.17. 재취득일 : 4.5. 재상실일 : 5.5.

- ▶ ②의 경우에는 전월(3월)에 근로일이 없고 당월(4월)에 1개월 간 8일 이상 근로하였기 때문에 근로시작일②(4.5.)를 취득일로 적용함

[사례 ③] 전월 근로일이 8일 미만이나 최초 근로일로부터 1개월 간의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 : **최초 근로일**

※ **(유의사항-경과규정)** 2022.1.1. 이전부터 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이 근로일수 월 8일 미만이지만 월 소득이 고시 금액 이상인 경우 취득일은 2022.1.1.로 적용



취득일 : 1.17. 상실일 :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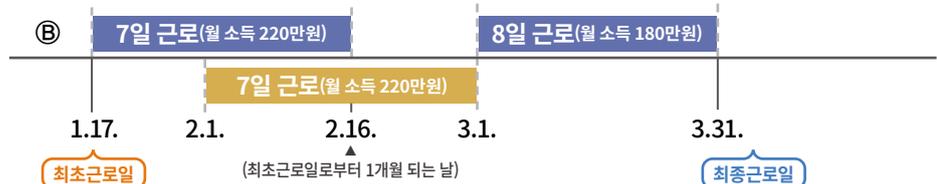
① 최초 근로일(1.17.)로부터 1개월 되는 날(2.16.)까지 총 7일 근로하여 「8일 이상 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나, **1개월간 소득이 보건복지부 고시(220만원) 이상**이므로 **가입 대상**이며 취득일은 최초 근로일(1.17.), 상실은 최종 근로일의 다음 날(4.1.)로 적용함

응용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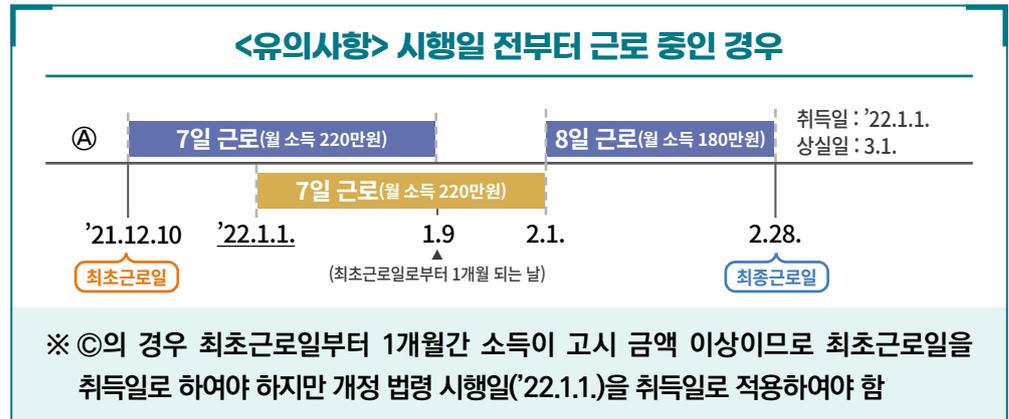
취득일 : 2.1. 상실일 : 3.1. 또는 3.24.*

* 최종 근로일의 다음 날(3.24.)로 상실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희망 시 적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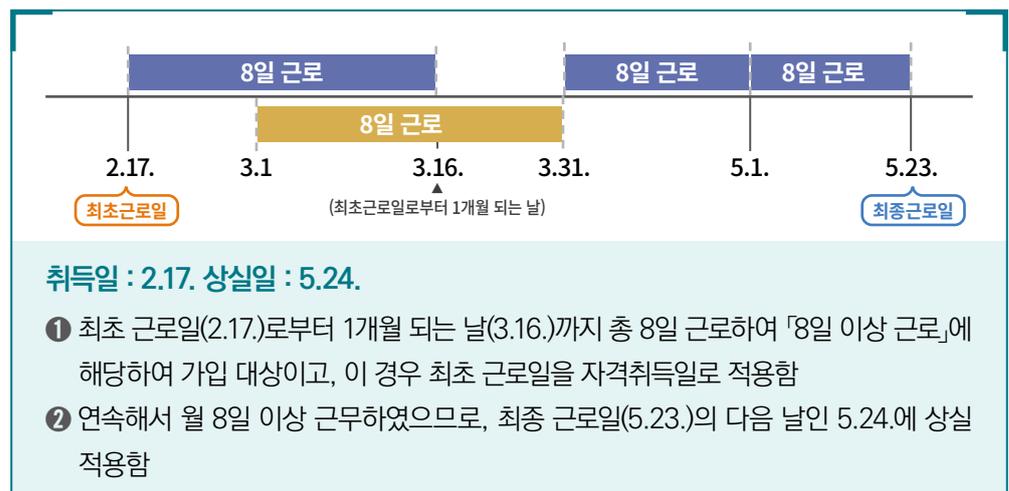
취득일 : 1.17. 상실일 : 4.1.

- ▶ ①의 경우 최초 근로일로부터 1개월간 월 소득이 고시 금액 미만이므로 다음 달 초일(2.1.)로 취득하고, 월 8일 미만 근무하면서 월 소득도 220만 원 이하인 최종 근로일이 속한 달(3월)의 초일 또는 최종 근로일의 다음 날(3.24.)로 상실
- ▶ ②의 경우 최초 근로일로부터 8일 미만 근로하였지만, 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으로 최초 근로일(1.17.)에 취득하고 최초 근로일 다음 달(2월)도 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으로 가입유지, 3월에는 8일 이상 근로하였기 때문에 최종근로일의 다음날(4.1.)로 상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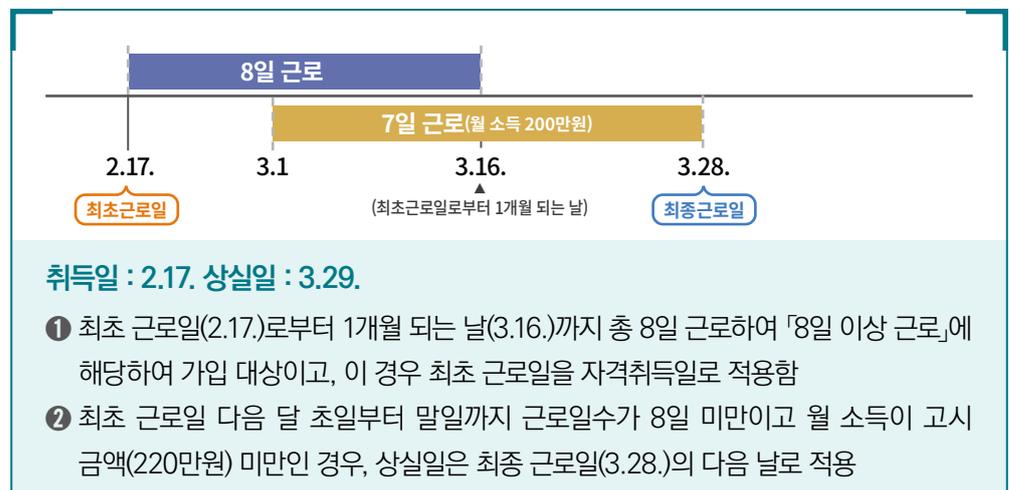


자격상실일

[사례 ①] 자격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 최종 근로일이 속한 달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



[사례 ②-1] 최초 근로일로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한 후, 다음 달에 8일 미만 근로하면서 월 소득이 220만 원 미만인 경우 : **최종 근로일의 다음 날**



[사례 ②-2] 초일인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간(전월) 근로일수가 월 8일 이상이며,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미만 근로하면서 월 소득 220만 원 미만인 경우 :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 된 날의 다음 날 또는 최종 근로일의 다음 날**

취득일 : 1.1. 상실일 : 2.1. 또는 2.26.

- ① 최초 근로일(1.1.)로부터 1개월 간 총 8일 근로하여 가입 대상이고, 이 경우 최초 근로일을 자격취득일로 적용함
- ② 최초 근로일 다음 달(2월)에 7일 미만이므로 다음 달 초일(2.1.)로 상실할 수 있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희망***하면 최종 근로일(2.25.)의 다음 날로도 상실 가능

* 신고서 제출로 희망 여부 판단

[사례 ③] 자격 취득 후 연속해서 가입 후 최종 근로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월 8일 미만으로 근로하면서 월 소득이 220만 원 미만인 경우 : **최종 근로일이 속한 달의 초일 또는 최종 근로일의 다음 날**

취득일 : 1.1. 상실일 : 3.1. 또는 4.1.

- ① 1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10일 근로하여 가입 대상이고 이 경우 취득일은 1.1.로 적용
- ② 1월 이후 2월과 3월에 연속해서 근무하였고 최종 근로 월(3월)에 8일 미만 및 고시 금액 이하의 월 소득이므로 상실일은 최종 근로 월 초일(3.1.) 또는 최종 근로일(3.31.)의 다음 날*인 4.1.을 상실일로 적용함

* 사용자와 근로자가 희망하면 최종 근로일의 다음 날로 상실 가능하며, 희망 여부 판단은 신고서 제출로 확인

기준소득월액 결정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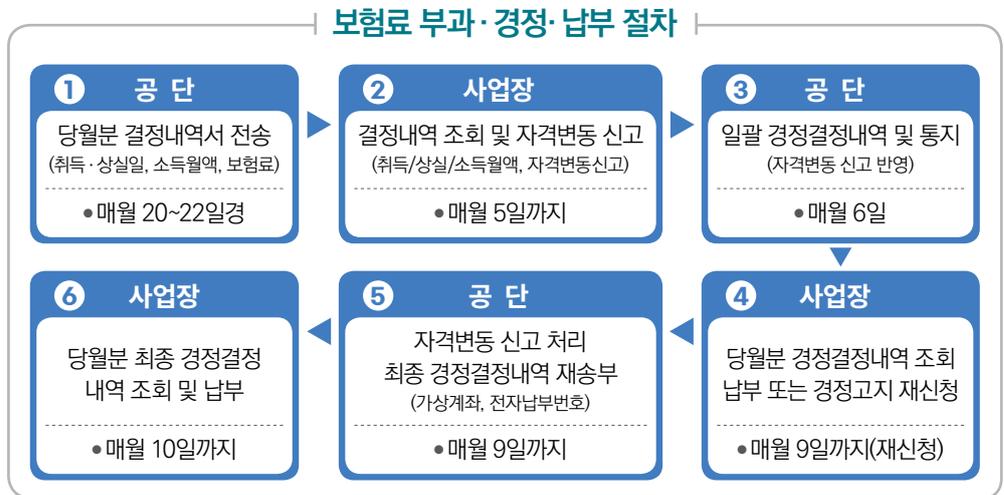
[사례 ①]



[사례 ②]



5. 보험료 납부 및 확인



가. 보험료 경정

● 당월 보험료 부과

- 자격변동 신고 마감일(매월 15일) 기준으로 보험료 결정 내역서 및 전자 고지서 송부

● 일괄경정

- 당월 결정 내역 확인 후 자격변동 신고 대상이 있는 경우 다음 달 5일(휴일인 경우 다음 날)까지 신고
- 변동사항을 반영한 일괄경정 결정 내역서를 사업장에 EDI로 통지(매월 6일)
- 건설 현장 사업장은 반드시 일괄경정에 의한 최종 결정 금액 기준으로 보험료 납부
- * 일괄경정 고지 후 보험료는 전자 납부 번호(사회보험통합징수 포털,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CD/ATM) 및 가상계좌번호로 납부

● 수시 경정

- 일괄경정 전·후에 보험료 납부 및 사후정산이 필요한 경우 **수시 경정 고지 신청***
 - * 납부 마감일 1일 전(토·일·공휴일인 경우 전날)까지 EDI로 경정고지 신청
 - ※ 납부마감일에는 EDI 신청 불가(부득이한 경우 관할지사에 신청)
- 수시 경정 고지 신청 즉시 최종 납부할 금액 확정 후 경정결정 내역서를 EDI로 재송부

나. 보험료 납부확인

- 사업장은 「사업장 국민 연금보험료(월별) 납부확인서」, 가입자는 「연금산정용 가입내용확인서(사업장가입자)」 발급 (EDI 시스템, 방문, 팩스, 인터넷 발급 가능)



1. 일반 일용 근로자의 정의

- 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에 따라 **건설 현장 외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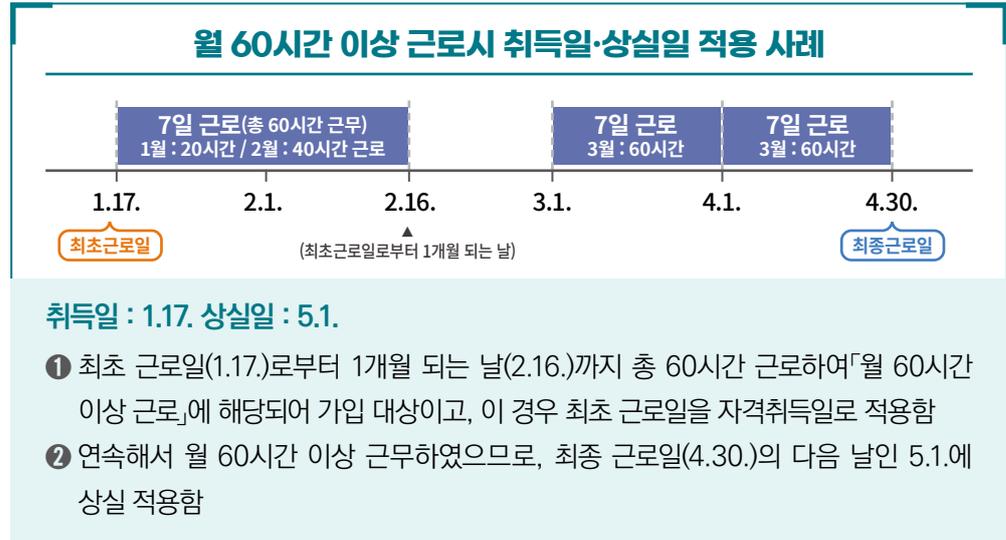
2. 사업장 적용

- 법 제3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사업장 단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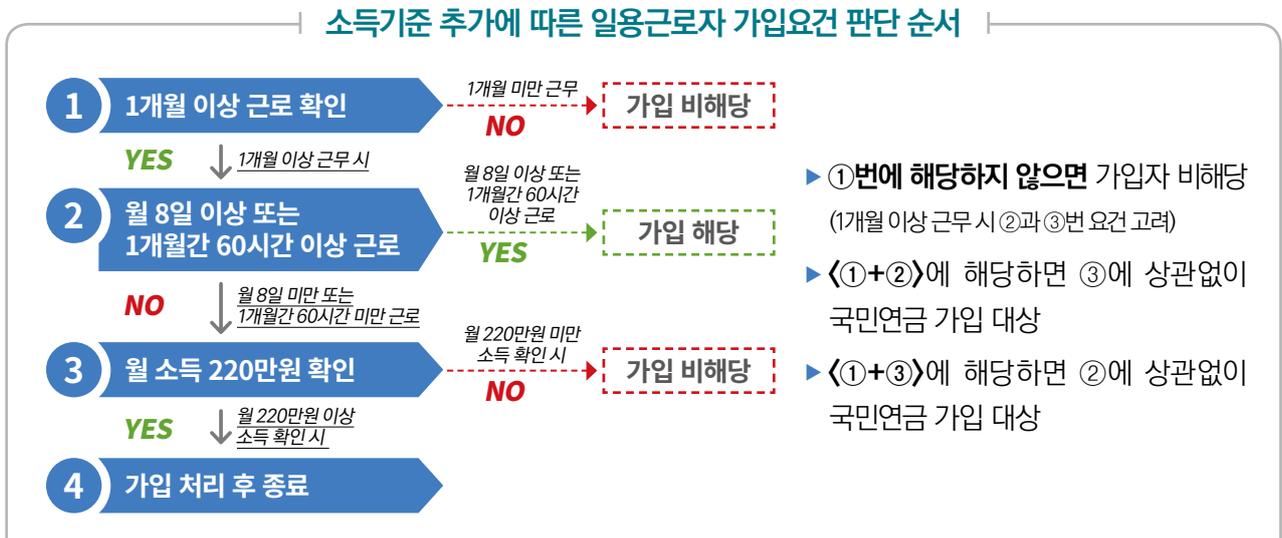
3. 사업장가입자 적용

가. 가입대상

-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22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가입 대상임
 - *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금액으로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1개월 이상 근로”, “그날 이후까지 근로한 경우”, 그리고 “월 8일 이상 근로”는 건설 일용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적용기준과 동일
 - 【II 건설일용근로자 업무처리기준 - 3. 사업장가입자 적용 - 가. 가입대상】 참고
 - 「월 8일 이상 근로」 및 「월 60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 월 60시간 이상 판단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內 “일평균근로시간”을 기초로 산정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7서식]
 - 실제 사업장에서 확인된 근로시간과 산정된 근로시간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장에 근로 내용 확인 신고 내역 수정 요청
- ※ 월 8일 미만 근로일 때만 「월 60시간 이상 근로」여부 확인 필요



- 「1개월 이상 근로」 및 「1개월 동안 22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할 경우
 - 최초 근로(고용)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근로하면서 **8일 미만**이면서 **60시간 미만** 근로하였지만 **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



- 일용근로자 월 소득 금액 산정방식: 건설 일용근로자와 적용방식 동일
 → 【II 건설일용근로자 업무처리기준 - 3. 사업장가입자 적용 - 가. 가입대상】 참고

변경 전·후 비교

변경 전(前)

- ✓ **근로(고용)계약이 1개월 이상인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포함)

 - 근로계약서의 근로일수가 월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 실제 근로기간·일수 불문
 - 근로계약서의 근로일수가 월 8일 미만이거나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나, 실제 월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 **근로(고용)계약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포함)

 - 제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변경 후(後)

- ✓ **근로(고용)계약이 1개월 이상인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포함)

 - 좌동
 - <추가사항> 근로계약서의 근로일수가 월 8일 미만이고 근로시간도 월 60시간 미만이나, 월소득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이상인 경우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

- ✓ **근로(고용)계약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포함)

 - 제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8일 미만이면서 60시간 미만 근로하였지만 월소득이 보건복지부 고시기준 이상인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나. 자격 취득 및 상실 시기

• 자격취득일

- ①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22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 ㄷ 최초 근로일
- ②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간 8일 미만 및 60시간 미만 근무하였고 그 기간 동안 소득이 220만 원 미만이고, 최초 근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 ㄷ 최초 근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1일) 취득
- ③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간의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 ㄷ 최초 근로일

• 자격상실일

- ① 자격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 최종 근로일이 속한 달에 월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해당 월 소득이 220만 원이상인 경우 ㄷ 최종 근로일의 다음 날

②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그 기간 동안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이고, 다음 달에 8일 미만 및 60시간 미만 근로하면서 소득이 220만원 미만인 경우 **최종 근로일의 다음 날**

※ 최초 근로일이 초일인 경우는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이 된 날의 다음 날로 상실 가능

③ 자격취득 후 연속해서 가입 후 최종 근로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월 8일 미만이면서 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거나 월 소득이 220만 원 미만인 경우 **최종 근로일이 속한 달의 초일(1일) 또는 최종 근로일의 다음 날***

* 사용자와 근로자가 희망하면 최종 근로일의 다음 날로 상실 가능하며, 희망여부 판단은 신고서 제출로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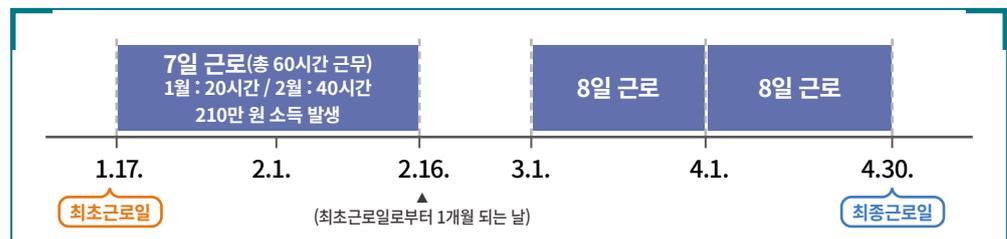
취득일 및 상실일 예시

▶ 일반 일용근로자의 취득 및 상실 예시는 기본적으로 건설 일용근로자의 취득일 및 상실일 사례와 동일하므로, 여기에서는 「1개월 동안 60시간 이상 근로」에 대한 조건의 예시만 제시함

→ 취득 및 상실일에 대한 예시는【3. 사업장가입자 적용 - 나. 자격취득 및 상실시기】참고

자격 취득 및 상실일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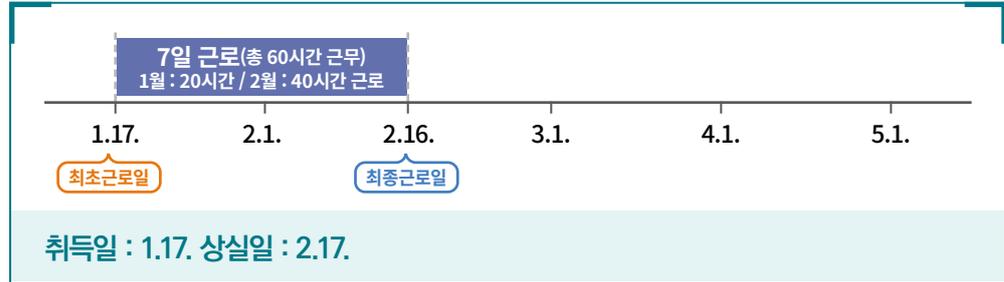
【사례 ①】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간 월 8일 미만 근로하였고 소득이 220만 원 미만이지만,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 **최초 근로일**



취득일 : 1.17. 상실일 : 5.1.

- ① 최초 근로일(1.17.)로부터 1개월 되는 날(2.16.)까지 총 60시간 이상 근로하여 「60시간 이상 근로」에 해당하여 가입 대상이고, 이 경우 최초 근로일을 자격취득일로 적용함
 - ② 이후 연속해서 월 8일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최종 근로일(4.30.)의 다음 날인 5.1.에 상실 적용함
 - ③ 만약, 4월에 대상자가 8일 미만 및 60시간 미만 근로하거나 월 소득이 22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상실일을 초일(4.1.) 또는 최종 근로일의 다음 날(5.1.)로 적용할 수 있음
- ※ 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희망할 때만 최종 근로일의 다음 날로 상실할 수 있음

[사례 ②]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만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 최초 근로일



[사례 ③] 전월 근로일이 8일 미만 및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나 최초 근로일로부터 1개월간의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 : 최초 근로일



4. 기준소득월액 결정

-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기준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결정 기준 적용
 - 건설 일용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방법 미적용



단시간 근로자 업무처리기준



1. 근로시간에 따른 사업장 가입자 적용

㉔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있는 경우

-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주단위로 정해진 경우에는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 사업장가입자 가입대상으로 봄
 ※ 단,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도 월 실제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근로자에 포함

㉕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

- 실제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 실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자는 사업장가입자 가입 대상으로 봄
- 실제 근로시간의 계산은 근로 개시일부터 다음 달 전일까지의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계산 후 사업장가입자 적용 여부 판단

고용기간에 따른 취득 및 상실일 적용

구 분 (근로계약 또는 실제 고용기간)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		취득일	상실일
	이상	미만		
근로계약이 1개월 이상인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포함) ※ 실제 고용 기간·시간 불문	적용	제외	최초 고용일	퇴사일의 다음 날
근로 계약이 1개월 미만 또는 근로계약이 없으나, 실제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적용	제외	최초 고용일 또는 근로자로 된 날	퇴사일의 다음 날 또는 근로자에서 제외된 날*

*근로자 제외 사유(상실 부호 22번)로 신고하는 경우만, 근로자에서 제외된 날 (월 60시간 미만인 해당 월의 기산일)로 상실 처리

관련 사례

사례 1 근로계약이 1개월 이상인 경우(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포함)

▶ 단시간근로자가 A사에 입사하여 <2016.1.12~2.11. 월 55시간 근로, 2016.2.12.~3.11. 월 59시간 근로, 2016.3.12~2016.4.11. 월 65시간 근로> 하다가 2016.4.14. 퇴사하고 **사용관계종료 사유로 상실신고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일·상실일은?

***근로계약 내용** : 2016년 1월 12일부터 월 55시간씩 근무(상실시기는 정하지 않음)

- ↳ 자격취득일 : 2016.3.12.(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으로 근로자에 해당된 날)
- ↳ 자격상실일 : 2016.4.15.(사용관계종료일의 다음날)

사례 2 근로계약이 없으나, 실제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I

▶ 단시간근로자가 B사에 입사하여 <2016.1.12~2.11. 월 55시간 근로, 2016.2.12~3.11. 월 59시간 근로, 2016.3.12~2016.4.11. 월 65시간 근로> 하다가 2016.4.14. 퇴사하고 사용관계종료 사유로 상실신고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일·상실일은?

- ↳ 자격취득일 : 2016.3.12.(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으로 근로자에 해당된 날)
- ↳ 자격상실일 : 2016.4.15.(자격상실일은 사용관계종료일의 다음날)

▶ 단시간근로자가 B사에 입사하여 <2016.1.12~2.11. 월 55시간 근로, 2016.2.12~3.11. 월 59시간 근로, 2016.3.12~2016.4.11. 월 65시간 근로> 하다가 2016.4.14. 퇴사하고 근로자 제외 사유로 상실신고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일·상실일은?

- ↳ 자격취득일 : 2016.3.12.(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으로 근로자에 해당된 날)
- ↳ 자격상실일 : 2016.4.12.[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해당 월의 기산일(근로자에서 제외된 날)]

사례 3 근로계약이 없으나, 실제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II

▶ 단시간근로자가 C사에 입사하여 <2016.1.12~2.11. 월 55시간 근로, 2016.2.12~3.11. 월 59시간 근로, 2016.3.12~2016.4.11. 월 65시간 근로, 2016.4.12~5.11. 월 55시간 근로> 하다가 2016.5.14. 퇴사 하고 근로자 제외 사유로 상실 신고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일·상실일은?

- ↳ 자격취득일 : 2016.3.12.(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으로 근로자에 해당된 날)
- ↳ 자격상실일 : 2016.4.12.[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해당 월의 기산일(근로자에서 제외된 날)]

2. 소득금액에 따른 사업장 가입자 적용

EQ 1개월 이상 소득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적용 대상)**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월 소득이 고시 금액(220만 원) 이상*인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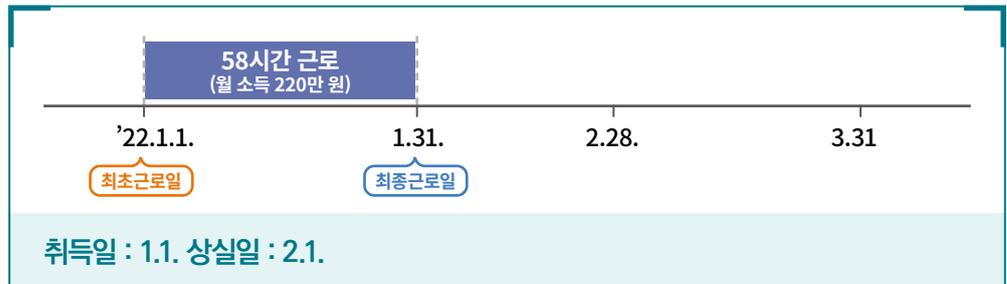
* 최초 근로(고용)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의 소득으로 가입 여부 판단

- **(적용기준)**

- 기본조건 : 1개월 이상 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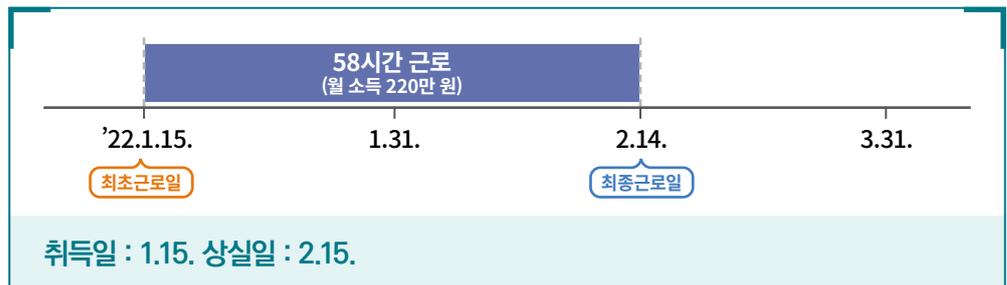
- ※ 1개월 미만 근로 시 소득금액 판단할 필요 없이 사업장가입자 적용 불가

- 초일 입사 시 : 1개월(초일부터 말일까지)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 사업장 가입자 취득



※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가입대상이므로, 소득금액 판단 불요

- 월 중 입사 시 : 중도입사(예: 1.15.)인 경우, 입사일(또는 최초근로일)로부터 1개월간 소득을 확인하여, 220만 원 이상인 경우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



- **(소득 확인 방법)**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등으로 월 소득 220만 원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국민연금 자격처리

EQ 소득금액 산정 방식

- **(원칙)** 최초 근로(고용)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근로하면서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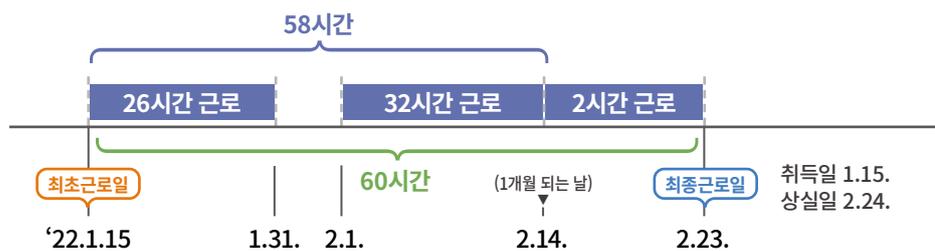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지만 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

- (초일 취득 시)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소득을 합산 (별도의 산정 방식 불요)
- (월 중 취득 시) 연속 근로 월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소득을 1개월 되는 날까지의 근로시간에 곱하여 계산

소득기준 추가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가입요건 판단 순서



[사례] 최초 근로일('22.1.15), 최종 근로일('22.2.23.), 1.15.~2.14.까지 58시간 근로, 1월 소득 993,200원(26시간 근로), 2월 소득 1,298,800원(34시간 근로), '22.2.1.~2.23.까지 34시간 근로



▶ 산정방식

- ① $(993,200^1 + 1,298,800^2) \div 60^3 = 38,200$ 원
- ② $38,200 \times 58^4 = 2,215,600$ 원 → 220만 원 이상으로 가입대상

- 1) 1월 소득(26시간)
- 2) 2월 소득(34시간)
- 3) 26시간(1월 총 근로시간) + 34시간(2월 총 근로시간)
- 4) 최초 근로일로부터 1개월 까지의 근로시간

④ 소득금액에 따른 자격취득 및 상실일 사례

[사례] 입사하여 월 60시간 미만 근로 및 월 소득 220만원 이하였다가,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소득 220만원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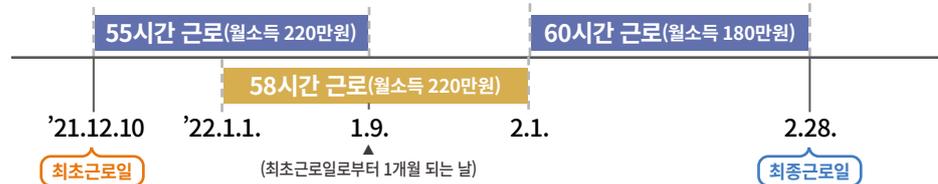


▶ 취득일 : 2022.2.16.(근로자에 해당된 날)

▶ 상실일 : 2022.4.16.(사용관계종료 사유로 상실신고하는 경우, 사용관계종료일의 다음날)

※ 만약, 3.16. ~ 4.15.에 대상자가 60시간 미만 근로하면서 소득이 220만원 미만인 경우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 및 월 소득 220만원 미만인 월의 기산일(3.17.)로 상실 할 수 있음

[유의사항] 시행일('22.1.1.) 전부터 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이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지만 월 소득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 취득일 : 2022.1.1(개정 법령 시행일)

▶ 상실일 : 2022.3.1.(사용관계종료 사유로 상실신고하는 경우, 사용관계종료일의 다음날)

※ 최초근로일부터 1개월간('21.12.10~'22.1.9.) 소득이 고시 금액 이상이므로 최초근로일을 취득일로 하여야하나, 개정 법령 시행일('22.1.1.)을 취득일로 적용하여야 함



1. 국민연금 웹 EDI 이용하기

EDI서비스란?

- 방문, 팩스, 우편을 대신하는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가입 사업장 전용 전자신고(신청) 서비스
- 신고(청)서 전자발송, 처리결과 조회, 각종 통지문서 수신
- 별도의 이용료 없이 인터넷과 공인인증서로 이용 가능한 국민연금 EDI, 건강보험 EDI와 일부 이용수수료가 부과되는 사회보험 EDI가 있음

EDI서비스는 이용방법 및 절차

가. EDI서비스 이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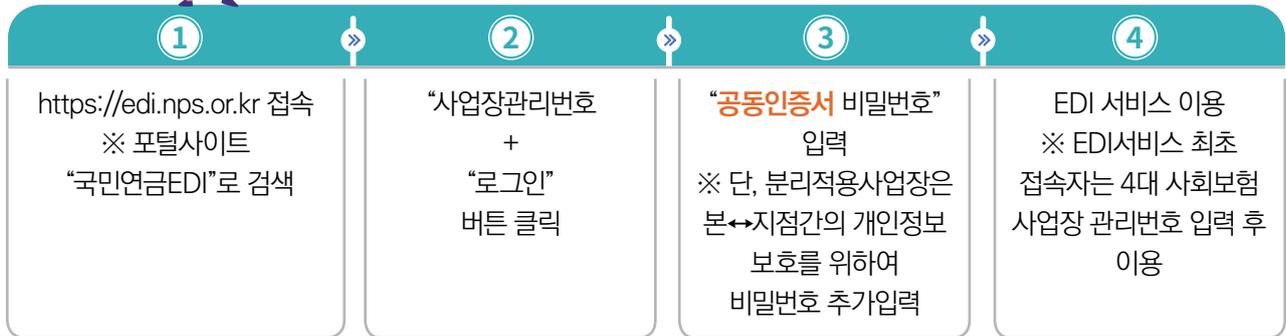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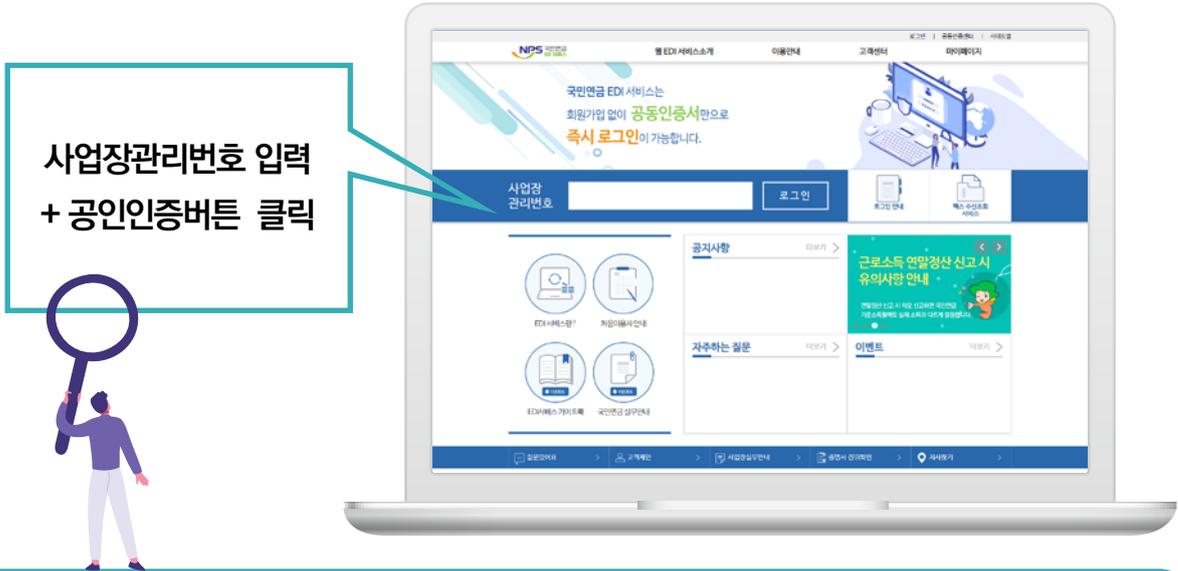
- ① (EDI 들어가기) 인터넷 주소창에 <https://edi.nps.or.kr> 입력 선택
- ② (EDI 서비스 이용) 사업장관리번호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이용
→ 단, 분리적용사업장은 비밀번호 추가 입력

나. 공인인증서 사용방법

사업장구분	사용가능 인증서	
	대표자 개인인증서(개인용)	법인인증서(사업자용)
개인사업자	사용 가능	사용 가능
법인사업자	사용 불가	사용 가능

- 공동대표 개인사업자는 국민연금에 책임대표로 등록된 사용자의 개인인증서만 사용
- 모든 유효한 공인인증서는 사용가능하나, 인증서 발급기관에서 사용용도를 제한하는 경우는 사용 불가
예) 국민은행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개인사업자 및 임의단체의 공인인증서
- 공인인증서는 국민연금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면 별도의 비용 없이 '보건복지 분야전용 공인인증서' 발급 가능

다. 로그인하기



- 법인사업장 :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
- 개인사업장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책임)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

라. 신고서 작성하기

4대 공통신고서 4대사회보험(국민·건강·고용·산재보험) 일괄 신고

- ① 사업장(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가입대상 입사
- ② 사업장(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 가입자 퇴사
- ③ 사업장(직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
→ 가입자 성명/주민번호 등 변경
- ④ 사업장 내용변경신고서
→ 사업장의 주소/전화·팩스번호 등 변경
- ⑤ 사업장 탈퇴(소멸) 신고서
→ 사업장 휴·폐업 등
- ⑥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연금고유 신고서 국민연금 고유신고 업무로, 국민연금에만 해당되는 신고

- ①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정정)신고서
→ 가입자 취득일, 상실일, 예외일, 납부희망여부 등 변경
- ②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 가입자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산재휴직 등
- ③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재개신고서
→ 납부예외신청자의 복직신고
- ④ 분리적용 사업장가입자 전입신고서
→ 분리적용사업장간 근무처 이동신고
- ⑤ 분리적용사업장 등록/해지신고서
- ⑥ 소득총액신고서
- ⑦ 소급분 분할납부 신청서
- ⑧ 소규모사업장 연금보험료 지원신청서

사. 기타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 “건설현장 사업장성립신고 바로가기”)



2. 사회보험 EDI 서비스 이용하기

☎ 사회보험 EDI서비스

http://bips.bizmekka.com/npc/npc_info/npc_edi_inf.htm

EDI 회원가입후 서비스 가입확인(ID 부여받기) ▶ EDI 프로그램 설치(부여받은 ID로 접속) ▶ EDI 환경설정 ▶ 보안인증서 설치 ▶ 신고 및 신청 업무 ▶ 신고·신청내역 결과 확인

☞ 사회보험 EDI 가입 및 이용과 관련한 문의는 사회보험 EDI 포털 (<http://bips.bizmekka.com>) 및 KT EDI콜센터 (080-318-5306)로 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 EDI 프로그램 설치하기

kt bizmekka 사회보험 EDI 검색

서비스소개 | 서비스이용 | 사회보험EDI | 부가서비스 | EDI고객센터

사대보험신고 ?
당황하지 않고 사회보험EDI면 딱~, 끝!

아이디: 영상듣기
비밀번호: 새로그인 로그인
아이디/패스워드 찾기 위에 보이는 보안문자를 입력해주세요.

사회보험EDI 가입

사회보험EDI 실행

사회보험EDI 설치

사회보험 EDI 서비스 이용방법

1. 가입절차
2. 프로그램설치
3. 환경설정
4. EDI 실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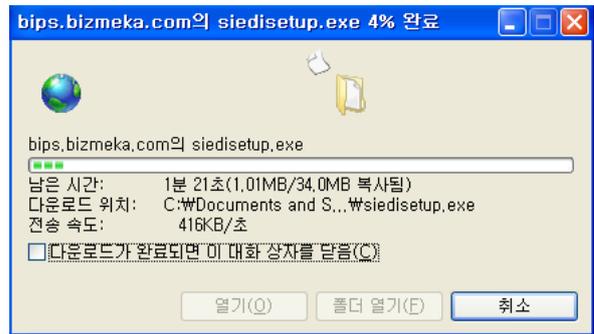
공지사항 전체보기 >

사회보험EDI	국민연금	건강보험	지류실
• 오류발생시 조치사항(2019년12월 기준)			2015-12-09
• EDI 시스템 점검안내			2017-08-31
• EDI 시스템 점검 안내			2017-07-14
• 시스템 개편으로 인한 가입/변경/해지 일시중단 안내			2017-05-25
• EDI 시스템 점검안내			2017-05-22
• EDI시스템 점검 안내			2017-03-27
• 고용보험피보험 자격관리 업무근로복지공단이관안내			2016-12-26
• EDI시스템점검안내			2016-12-12

kt bizmekka
사회보험 EDI
소득총액 이벤트

34

- 1 사회 보험 EDI 포털 사이트(<http://bips.bizmeka.com>)에 접속합니다.
- 2 사회보험 EDI 가입 시 부여 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합니다.
- ※ 아이디를 모를 경우 “아이디/비밀번호 찾기”를 클릭하거나 “서비스 가입확인”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 [사회보험EDI 설치]버튼을 클릭합니다.
- 4 [저장]버튼을 클릭합니다.
설치 프로그램이 서버로부터 담당자 컴퓨터로 다운로드 됩니다.
- 5 다운로드 완료 후 자동으로 압축이 풀리며 <다음> 버튼 선택하여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 6 프로그램 설치가 정상적으로 마치고 <완료>를 선택하시면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만들어집니다.
- ※ 위의 방법으로 설치가 되지 않는 경우 우측 상단의 EDI 고객센터 → 자료실 “54.통합설치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 7 바탕화면에 사회보험 EDI 아이콘이 생성됩니다.



EQ 이용요금

사회보험가입 인원수별	월 정 액		
	국민연금 서비스만 이용하는 경우	건강보험 서비스만 이용하는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서비스 모두 이용하는 경우
5인 이하	무료	무료	무료
6 ~ 9인	1,100원 (부가세 포함)	1,100원 (부가세 포함)	2,090원 (부가세 포함)
10 ~ 49인	2,750원 (부가세 포함)	2,750원 (부가세 포함)	5,225원 (부가세 포함)
50 ~ 99인	4,070원 (부가세 포함)	4,070원 (부가세 포함)	7,733원 (부가세 포함)
100 ~ 299인	4,180원 (부가세 포함)	4,180원 (부가세 포함)	7,942원 (부가세 포함)
300 ~ 499인	4,400원 (부가세 포함)	4,400원 (부가세 포함)	8,360원 (부가세 포함)
500인이상	6,600원 (부가세 포함)	6,600원 (부가세 포함)	12,540원 (부가세 포함)

- 국민연금 EDI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업장에서 송·수신한 문서를 처리하고 EDI시스템의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장에서 KT에 부담하는 요금을 말함
 - 이용요금은 사업장에서 신고·신청업무를 공단으로 송신한 해당 월부터 정액제로 부과
 - 국민연금 EDI서비스 <https://edi.nps.or.kr>를 이용하시는 경우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요금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 요금 적용일자 : 가입자 수는 매월 25일경(휴일이 아닌 경우) 기준
 - ▶ 복수서비스란 국민연금, 건강보험EDI 동시 사용자일 경우 해당됩니다.

3.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 이용하기

가. 4대사회보험 포털서비스란?

4대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한 각종 신고·신청 및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이하 '센터') 홈페이지(www.4insure.or.kr)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할 수 있는 인터넷 민원처리 서비스

나. 4대사회보험 포털서비스의 장점

- (1)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직접 서비스 이용 가능
- (2) 4대사회보험의 현재 가입내역을 한 번에 확인 가능 (증명서 발급)
- (3) 헬프데스크를 통한 전화상담 및 원격지원 등의 안내서비스 이용 가능
- (4) 보안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철저

다. 포털서비스 내용

- (1) 4대사회보험 신고 (※ 국민연금 용어 기준)

구분	내 용	해당 보험	
사업장 (회원)	사업장	사업장 성립/탈퇴/내용변경 신고	연금,건강,고용,산재
		보험료지원 신청(두루누리)	연금,고용
		자동이체 신청(사업장)	연금,건강,고용,산재
	사업장 가입자	자격 취득/상실/내용변경 신고	연금,건강,고용,산재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	건강
		기준소득(보수)월액 변경 신청	연금,건강,고용,산재
		휴직 등 신고	연금,건강,고용,산재
		근무처/근무내역 변동 신고	건강
		이직확인서	고용
		소득총액 신고	연금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고용
		대량민원접수(자격 취득/상실)	연금,건강,고용,산재
		대량민원접수(피부양자신고)	건강
		개인(비회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상실/자격변동 신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	건강		
자동이체 신청(지역가입자)	연금,건강		

(2) 증명서 발급

사업장(회원)	사업장 가입내역확인서	미가입된 내역은 공란으로 표시. 과거의 이력은 보험별로 기관으로 개별 요청
	사업장 가입자명부* (300인 미만)	
개인(비회원)	(개별)사업장 가입자명부* (발급대상자 선택)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 30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는 4대사회보험 기관 지사로 가입자명부 발급 요청

라. 포털사이트 이용방법

(1) 접속 및 회원가입

① 홈페이지 접속

- 주소창에 'www.4insure.or.kr' 입력
- 포털사이트에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또는 '4대사회보험'으로 검색

② 회원가입(사업장만 해당 / 개인은 회원가입 없이 이용 가능 (단, 공동인증서 필요))

- 실명인증: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실명 인증 (중복 가입 가능)
※ 설립된 지 3일 이내의 사업장은 실명인증이 불가능할 수 있음(국세청자료 연계)
- 회원정보 입력 및 사업장관리번호 확인: 기존 사업장관리번호 연동 가능
- 공동인증서 등록: 공동인증서 로그인에 사용하기 위한 인증서 등록
※ 민원신고 및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인증서를 등록해야 함

(2) 로그인

① 공동인증서 로그인: 홈페이지의 모든 서비스 이용 가능

- 사용가능 공동인증서 (발급 대상 기준)

사업장 (회원)	법인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인증서
	개인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인증서 또는 대표자의 개인 인증서
개인(비회원)		이용자 개인의 주민(외국인)등록번호로 발급된 인증서

- 사용가능 공동인증서 (발급 목적 기준)
 - 은행(증권)/신용카드/보험용 인증서, 범용 개인/기업 인증서, 보건복지전용 인증서 등
 - 특수목적용인 전자세금용 인증서와 사설 인증서는 사용불가
 - ※ 센터는 별도의 인증서 미발급(해당 인증서 발급기관 또는 대행기관을 통하여 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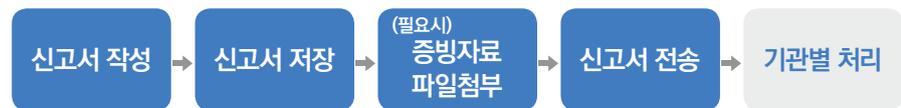
② 아이디 로그인: 민원신고 및 증명서 발급 서비스 이용 불가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 아이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또는 공동인증서 인증※)을 통해 확인
 - 비밀번호: 아이디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공동인증서 인증※)을 통해 재등록
 - ※ 신규(재)발급하여 센터에 미등록된 인증서로도 인증 가능

(3) 민원 신고 및 증명서 발급

① 민원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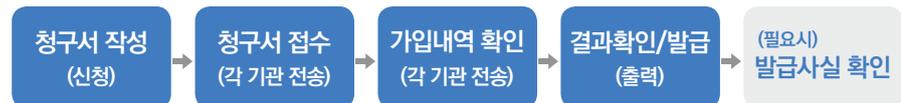
- 진행과정



- 신고서 작성시 신고서 상단의 [작성예시] 및 **[안내영상 보기]**를 참고

② 증명서 발급

- 진행과정



- 청구서 작성 전 출력가능 프린터 여부 등 증명서 발급 안내사항 반드시 확인

(4) 처리결과 확인

① 홈페이지 확인

- 홈페이지, 지사(방문, 팩스), EDI를 통한 모든 신고·신청의 처리 현황에 대해 조회 가능
-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민원처리 현황] 또는 [민원신고] - [민원처리현황 조회]에서 확인
- 민원신고 처리 상태

처리상태	내용
미전송	신고서를 작성(저장) 했지만 처리기관으로 전송되지 않은 상태
접수완료	처리기관으로 전송 대기중인 상태(포털사이트 내에서는 접수완료된 상태)
접수취소	작성(저장)한 신고서를 취소한 상태
전송완료	신고서가 처리기관으로 전송된 상태
처리완료	신고서가 처리기관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된 상태
일부오류/ 처리오류 [※]	신고서의 일부 또는 전체가 오류 처리된 상태

※ 해당 신고서의 [상세보기] 단추를 누르면 간단한 오류메시지 사유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오류내역은 [처리자, 지사번호]를 참고하여 처리기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알림톡(SMS 등) 확인

-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신청 완료 후 **알림톡(SMS 등)** 수신을 신청한 경우만 확인 가능
- 최종 처리결과(처리완료/오류)를 처리 기관별로 확인

마. 이용문의

문의사항	기관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접속 및 운영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063) 711-7800	www.4insure.or.kr
제도 및 업무처리 기준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유료) www.nps.or.kr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www.nhis.or.kr
	고용보험 피보험자 고용보험 사업장 및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www.kcomwel.or.kr total.kcomwel.or.kr
보험료 고지 및 납부, 납부확인서 등 징수 업무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1577-1000	si4n.nhis.or.kr

※ 홈페이지 이용 또는 신고서 작성 중 오류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 신고서 입력 내용 및 업무처리기준과 징수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은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업무안내 필요)

4. 4대사회보험 QR신고와 QCR 인식 시스템 이용하기

가. 4대사회보험 QR신고란?

국민연금공단이 사업장의 간편한 4대사회보험 신고를 위해 (주)더존비즈온과 업무협약을 맺고 세무회계 프로그램인 SMART-A 나 WEHAGO T에서 4대사회보험 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전송하면 QR코드가 인자되어 이를 인식하여 신고서를 간편하게 전송 및 자동처리하는 신고방법입니다.

나. 4대사회보험 포털서비스의 장점

- (1) 전송시간과 비용이 절약
 - (기존) 신고서 작성 - 출력 - 직인 날인 - 이동 - 팩스전송 - 사후 확인
→ (개선) 신고서 작성-전송
 - (기존) 출력, 팩스 전송, 전송 후 전화 확인 등에 각각 비용 발생
→ (개선) 신고에 따른 일체 비용 없음
- (2) 직원이 입력하지 않고 자동 접수·처리되어 직원의 실수로 인한 오류 방지
- (3) 4종의 신고서식은 완전자동 처리되어 보다 신속한 처리 가능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보험료지원, 납부재개 등 4종 신고서는 전송과 동시에 완전자동 처리되어 보다 신속하게 4대보험 신고 가능
- (4) 프로그램에서 접수처리 결과를 즉시 확인 가능
 - SMART-A 내의 '사회보험 접수현황'에서 실시간으로 접수결과 확인 가능

다. QR신고 가능 서식

구분	내 용	해당 보험	
사업장	국민연금 고유서식	사업장 가입자 내용변경(정정)신고서	국민연금 고유업무
		경정고지신청서	국민연금 고유업무
		분리적용사업장가입자 전입신고서	국민연금 고유업무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	국민연금 고유업무
		연금보험료 납부재개 신고서	국민연금 고유업무
		소득총액 신고서	국민연금 고유업무
4대보험 공통서식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국민,건강,고용,산재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국민,건강,고용,산재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국민,건강,고용,산재
		사업장 내용변경신고서	국민,건강,고용,산재
		사업장 탈퇴신고서	국민,건강,고용,산재
	보험료지원신청서	국민,고용	

라. QR신고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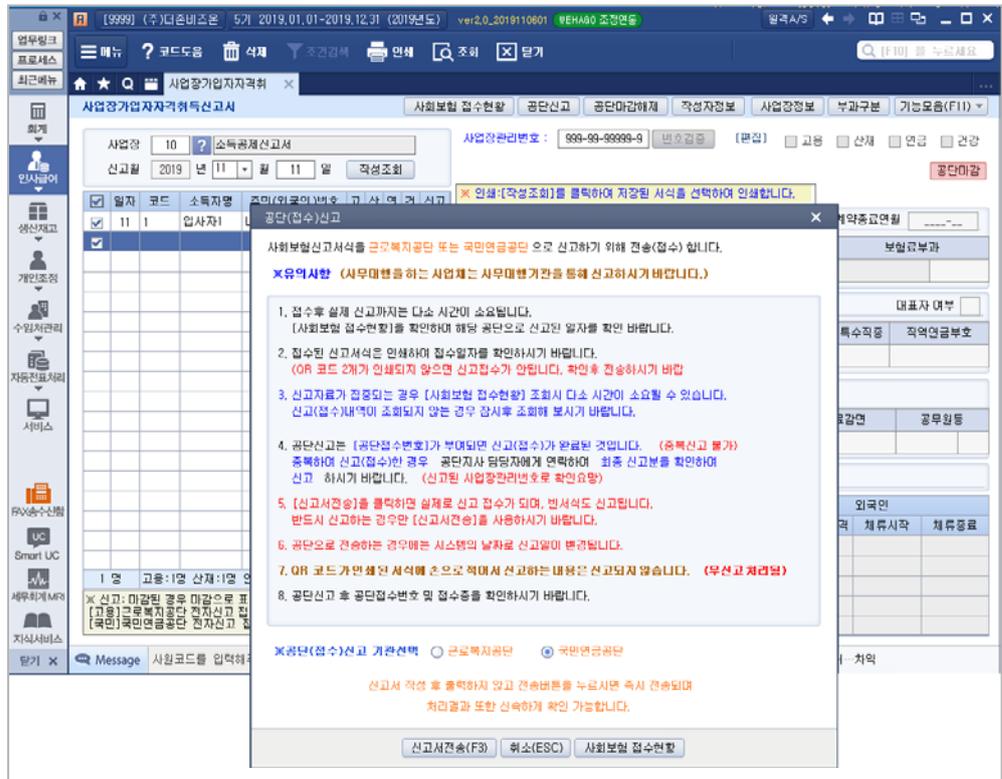
- (1) 더존비즈온의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신고서 작성 및 전송
 - 전송 가능 프로그램 : SMART-A, WEHAGO T

④

사회보험 서식 QR코드 신고 사용방법

- 1) **작성자정보** : 신고서 신고후, 연락받을 신고담당자의 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 작성자 전화번호 입력 필수
- 2) **공단마감** : 해당 서식을 국민연금공단으로 신고 전송(접수)하기 위해 마감합니다.
※ 사업장관리번호 적합성 검증 :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관리번호가 적합한지 체크할 때 사용
- 3) **공단신고** : 작성한 해당 서식을 국민연금공단으로 신고 전송(접수) 합니다.
※ 전자도장 날인하여 전송
- 4) **사회보험 접수현황** : 공단으로 전송(접수)된 신고서의 접수상태 확인 및 접수증 출력 가능

(2) 프로그램 입력 화면



마. 4대사회보험 OCR인식시스템이란?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는 업체의 4대 사회보험 신고처리를 위하여 도입한 시스템으로 일반팩스로 접수된 신고서를 OCR시스템으로 판독하여 데이터를 추출하여 직원이 입력하지 않고 원본데이터와 대조하여 잘못 읽은 부분만 수정하여 전송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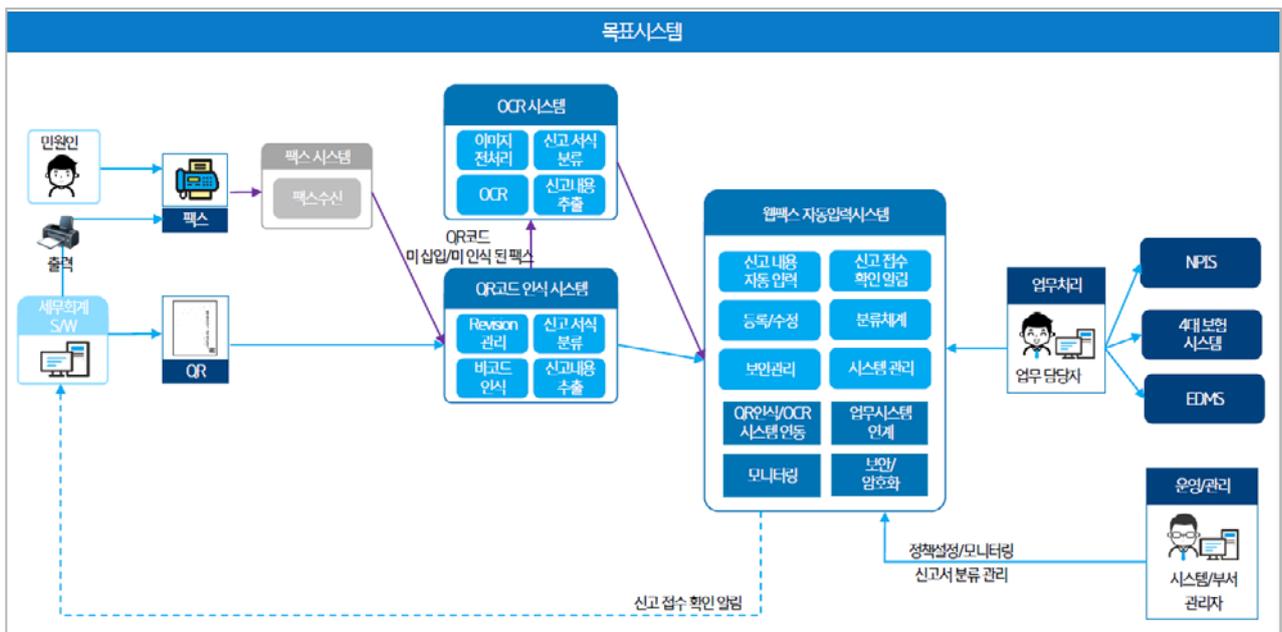
바. OCR신고의 장점

- (1) 직원이 입력하지 않고 화면에서 판독한 신고서를 처리함으로써 직원의 입력실수로 인한 오류 방지
- (2) 공단의 입력처리 시간 및 과정이 단축되어 보다 많은 신고서를 짧은 시간에 처리할 수 있어 사업장에서 전송한 신고서가 신속하게 처리 가능전송시간과 비용이 절약

사. OCR신고 가능 서식

- QR 서식과 동일함

아. 국민연금공단 QR 및 OCR 구성도



자. 4대사회보험 QR 및 OCR 인식시스템 관련 Q&A

Q1 웹팩스 QR신고란 무엇인가?

- 공단과 협약을 맺은 (주)더존비즈온에서 운영하는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4대보험 신고서식을 작성 후 전송(QR코드로 자동 변환)하면 국민연금 공단의 웹팩스 시스템에 전송되어 자동처리 되는 것을 말합니다.

Q2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전송하는 것과 출력하여 팩스로 넣는 것의 차이는?

- ‘SMART-A’ 나 ‘WEHAGO T’에서 작성 후 전송하면 전용선을 통해 공단의 웹팩스 시스템에 전송되며 서식 4종(사업장가입자 취득, 사업장가입자상실, 보험료지원, 연금보험료 납부재개신고서)에 대해서는 즉시 자동으로 처리되며 나머지 서식도 QR인식 완료되어 직원 확인 후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 반면,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 후 출력하여 팩스로 접수하면 QR코드가 제대로 읽히지 못한 경우 OCR인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인식율이 떨어질 수 있어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Q3 QR방식이 OCR방식보다 더 정확하게 인식되나요?

- 네, QR로 인식해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신고서가 처리될 수 있으므로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고하는 것이 빠른 처리와 처리결과 즉시 확인 할 수 있어서 사용이 더 편리합니다.

Q4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신고 시 도장날인도 가능한가요?

- 네, 프로그램에 저장되어 있는 해당 사업장의 전자 도장을 날인(클릭) 하면 됩니다.

Q5 세무회계프로그램에서 4대보험을 신고하면 건당 비용이 발생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발생하는 연간 유지보수 비용외에 신고에 따르는 추가 비용이 발생되지 않아 오히려 팩스로 넣는 것보다 비용이 절약됩니다.

Q6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요?

- 네, 신고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EDI, 4대포털사이트에서 직접 입력

등, 팩스로 신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임의로 작성한 서식이 아닌 공단 사이트에 있는 표준서식을 사용하는 것이 정확한 OCR인식에 도움이 됩니다.

4대사회보험 기관별 업무안내

담당 기관	안내전화 / 홈페이지	해당 업무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 고유 업무
	www.nps.or.kr	
	edi.nps.or.kr	4대보험 자격신고 및 국민연금 고유 업무
건강보험공단	1577-1000	건강보험 고유 업무
	www.nhis.or.kr	건강보험 고유 업무
	si4n.nhis.or.kr	4대보험 보험료 징수관련 업무 - 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등
	edi.nhis.or.kr	4대보험 자격신고 및 건강보험 고유 업무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보험 고유 업무
	www.kcomwel.or.kr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고유 업무
	total.kcomwel.or.kr	4대보험 자격신고 및 고용 산재 고유 업무
사회보험 EDI	080-318-5306	4대사회보험 자격신고 업무 등
	www.ktedi.com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063-711-7800	4대사회보험 자격신고 업무 -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발급 등
	www.4insure.or.kr	



1.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1. 지원대상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중 사용자(법인 대표이사)를 제외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기준소득월액이 고시소득* 미만인 근로자로 재산 및 종합소득 요건 충족자

* 고시소득 : 근로자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21년 기준 220만원)

(1) 사업장 기준

☑ 국민연금 가입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 근로자 10명 미만 판단 기준 —

-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 사업장 적용일이 전년도말 이전인 사업장
 -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신청일 직전 3개월 연속 근로자 수 10명 미만
 - ※ 사업장 적용일이 당해연도 이전으로 소급된 신규사업장도 동일 기준 적용
- 사업장적용일이 당해연도인 신규 사업장
 - 당연적용성립신고 당시 10명 이상이거나 사업장적용일이 당해연도 내에서 소급된 신규사업장인 경우 신청일 직전 3개월 연속 근로자 수 10명 미만
 - 사업장 적용일이 속한 달 ~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전달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장으로 적용된 달 ~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 연속 10명 미만

- 규모 판단 기준일 :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법인은 법인단위,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 단위로 판단
 - 분리적용 사업장(본점 및 지점으로 분리된 경우)도 동일하게 법인은 법인단위,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 단위로 판단
 - (예외적용)공동주택관리사무소는 관리사무소 현장별로 판단

공동주택관리사무소(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판단 관련 근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사업주가 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한 수로 한다. 다만,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한다.

- **(건설현장사업장)** 본점이 10명 미만이고, 건설현장사업장 단위별 10명 미만으로 요건 동시 충족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

구분	내 용	해당 보험
10명 미만	10명 미만	A,B 모두 지원
10명 미만	10명 이상	A만 지원 (본점은 건설현장의 10명 이상 여부와 상관없음)
10명 이상	10명 미만	A,B 모두 미지원 (건설현장은 본점이 10명 이상이면 지원비대상)

● 기타 판단 기준

- 외국인 : 보험료지원대상에서 제외
 - * 타 복지제도(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복지제도, 보육료 지원 등)의 경우, 외국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EQ 지원제외

- 사업장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할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정부기관과 지자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 한국은행, 공기업, 지방공사 및 공단, 정부 또는 지자체의 출자·출연·보조기관, 재출자·재출연 기관, 업무위탁 기관 등(인사혁신처 고시)

● 연중 3개월 연속으로 10명 이상인 경우

- 지원 대상 사업장으로 결정된 이후 가입자 수가 연중 3개월 연속으로 10명 이상*이면 4개월째 분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10명 이상 여부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해당연도 말까지 재지원 불가

● 연도별 지원대상 판단 기준

- 매년 12월말 기준 “보험료지원 중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익년도 지원여부를 판단 후 직권 제외 또는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
- (직권) 지원제외 대상
 - 매년 12월말 기준 당해연도 월평균 가입자수가 10명 이상
 - 당해연도 월평균 가입자수가 10명 미만이고, 다음연도 1월의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
- 계속지원대상
 - 매년 12월말 기준 당해연도 월평균 가입자수가 10명 미만이고, 다음연도 1월의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사업장의 보험료지원 재신청 절차 없이 다음연도 계속 지원

(2) 근로자 소득기준 및 지원기간 상한

㉔ 기준소득월액이 고시소득 상한액(2021년 : 220만원) 미만인 근로자

㉔ 지원대상 근로자의 “재산 또는 종합소득” (‘16.11.30 시행)

- 재산 및 종합소득 범위
 - (재산)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 (종합소득)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 * 근로소득 총급여액, 사업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 재산 및 종합소득의 보유수준 : 아래의 재산 및 소득의 보유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 재산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
 - 종합소득 : 종합소득의 연간 합이 3,800만원 미만(단, 2020.12.31. 이전부터 계속지원 중인 자는 '21.4월까지 종전규정(근로소득 : 2,838만원,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 : 2,100만원 미만) 적용

㉔ 지원대상 근로자의 지원기간 상한

- 지원기간 : 근로자별 36개월
 - 기존(30% 지원받는 자)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지원('20.11월분 보험료를 납부기한내 완납시 '20.12월 보험료에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며, '21년부터는 지원 중단)
- 지원기간 산정기준

- '18.1.1.이후 지원받은 기간에 대해 적용
- 신규가입자나 기존가입자로 지원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둘 이상 사업장 가입자가 각 사업장에서 지원받을 경우 해당 지원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2. 지원금액 및 방법

EQ 지원금액(2021.1.1. 개정 시행)

신규가입자	기존가입자
사용자 및 근로자 보험료의 각 80%	'21년부터 지원 중단 (종전 30% 지원자)

* 사용자 및 근로자 보험료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각 4.5%

● 가입자 구분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자**
- * 다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직전 3개월(3개월이 되는 달의 첫날을 포함한다) 이내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취득 이력에서 제외하고 판단
- **기존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보험료 지원금액 산정 예시(신규가입자 기준)

※ 원단위 금액은 절사 후 지원금액 산정

- 기준소득월액 1,155,000원(연금보험료 103,940원)
 - 사용자부담금 : 1,155,000원 × 4.5% = 51,970원
 - 근로자기여금 : 1,155,000원 × 4.5% = 51,970원
- 보험료지원금액 : 51,970원 × 80% = **41,570원**(원단위 절사) × 2 = **83,140원**
- 실납부보험료 : 103,940원 - 83,140원 = **20,800원**
 - 사용자부담금 : 51,970원 - 41,570원 = 10,400원
 - 근로자기여금 : 51,970원 - 41,570원 = 10,400원

EQ 지원방법

- **신청월분(해당월분) 보험료를 납기내 완납시 다음달 보험료에서 지원금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을 고지(보험료 납기내 완납 여부는 사업장 단위로 판단)**
 - 보험료 고지서에 보험료 지원금을 “**두루누리지원금**”으로 명시
 - 자격을 늦게 신고한 경우 소급 지원하지 않고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 **사업장에 다음달(지원금 공제받을 월) 당월분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미지원*

- * 월별보험료 완납 시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되므로 **폐업** 등으로 **사업장에 향후 부과될 당월분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미지원**

3. 지원 및 제외신청

☎ 신청서 접수

-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보험료 지원
 - 근로자의 별도 신청절차 없이 지원요건에 해당되면 **보험료 지원**
 -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 제보 허용** → 근로자 제보 시 확인 절차를 통해 가입 조치 후 지원 대상 여부 확인
- * (온라인 신고방법)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 소통과 참여 > 신고센터
- 신규가입자의 경우 지원 당시 기준소득월액은 지원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기준소득월액이 변경되어 다음연도의 기준소득월액이 고시소득상한액의 110%(‘20년 기준 236.5만원, ’21년도 기준 242만원)을 초과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개별 **보험료 지원 제외 신청 가능**

신청서 접수 및 신청서식

- 기존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작성·제출
- 신규사업장 :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에 신청 여부를 기재하여 제출
 - *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 중 한곳에 신청 가능(전자신청: <http://www.4insure.or.kr>)
 - * 당월 초일~말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나, 국민연금의 당월분 보험료 산정을 위한 자격마감일이 당월 15일 경이므로, 되도록 해당일까지 **보험료 지원 신청**

☎ 보험료 지원대상 결정·통보

- **공단 전산자료를 기초로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
 - * 가입누락, 소득축소 신고 등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된 것이 **사후에 발견되는 경우 제외** 조건 해당 시 **지원된 보험료가 환수될 수 있음**
- **매월 자격마감일(15일경)까지 접수된 지원신청서에 대해 보험료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장에 통보**
 - 월보험료 자료 구축 이후(매월 25일경) **사업주 지원금과 근로자 지원금 내역**을 사업장에 통지
 - **근로자용 통지서를 함께 동봉**하여 사업주가 지원대상자에게 근로자용 통지서를 배부토록 안내

㉔ 보험료지원 제외 신청

- 신규가입자 중 취득 신고 당시 신고소득은 적정하였으나, 추후 성과금 수령 및 급여 상향 등으로 다음연도 정기결정시 고시 소득 상한액의 110%가 초과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지원금이 전액 환수될 가능성 큼
- 이에 개별 지원제외신청이 가능토록 하여 환수 발생 최소화
 - “보수변동월”(다음연도 정기결정시 고시소득상한액의 110% 초과사유 발생월)의 다음달부터 지원제외
 - 신청방법 : 보험료지원제외신청서 제출(유선접수 불가)
- 연간 추정 월평균보수액 및 보수변동월 기재시 월급여가 불규칙한 경우 제외신청일이 속한 월의 전월까지의 당해연도 급여를 확인하여 추정 월평균보수액을 계산
 - * 급여명세서(임금대장 등) 확인을 통하여 보수변동월(초과사유발생월) 다음달 ~ 지원제외신청이전까지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 환수

■ 보험료지원제외신청서			
보험료지원 제외 사유			
<input type="checkbox"/> ㉔ 보험료 지원 제외 근로자(당해연도 신규 입사한 근로자 중 보험료 지원 대상자의 보수가 상한선 고시임금의 110%를 초과한 경우)			
성명	생년월일	연간 추정 월평균보수액	보수변동월
			년 월
			년 월
※ 신규 입사일이 속한 당해연도에 한하여 지원제외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간 추정 월평균보수액은 해당연도의 추정값을 기재합니다. ※ 보수변동월은 상한선 고시임금의 110%를 초과하게 된 보수변동월을 기재합니다.			

4. 부정수급 및 환수 등

㉔ 부정수급 및 환수

- 원천적으로 지원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전액 환수
 - * 예시) 고의로 근로자를 가입 신고하지 않아 10명 미만 요건 충족 후 보험료 지원받은 경우
- 지원당시 요건은 충족했으나, 변경이 발생한 경우
 - **사업장 규모**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인 것이 사후 확인되는 경우 연속 10명 이상인 4개월째 보험료 지원금부터 환수
 - **근로자 소득월액 기준** 고의로 전년도 소득을 과소 신고한 것이 확인된 경우 : 지원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 당해연도 신규입사자의 경우

: 지원대상 근로자의 다음연도 확정된 기준소득월액이 지원요건 상한선의 110% ('20년 기준 236.5만원, '21년 기준 242만원)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 단, 지원제외신청시에는 “보수변동월”(다음연도 정기결정시 고시소득상한액의 110% 초과사유 발생월)의 다음달부터 지원제외

☞ 환수절차

- 공단에서 보험료지원금 환수결정·고지·징수 수행
- 납부의무자 : 보험료지원사업장 사용자
- 고지 및 납부기한
 - 환수대상자 결정 : 매월 정기고지마감 익일(21일 경)
 - 정기고지
 - * 환수결정통지서 및 고지서 동봉 발송 : 매월 25일 경
 - * 납부기한 : 환수결정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
 - 독촉고지
 - * 최초고지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2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고지
- 고지금액
 - 환수 결정된 보험료지원금 전액 고지(연체금 또는 가산이자 없음)
- 고지서 발송
 - 일반우편발송
 - * 가동중사업장 : 사업장으로 발송
 - * 탈퇴사업장 : 사용자(책임대표자) 주소지로 발송
- 납부방법
 - OCR장표(창구수납),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CD/ATM, 고정가상계좌, 일회성가상계좌, 신용카드

2. 실업크레딧 제도

1. 개요

-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산입하는 제도
 - * (구직급여 수급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사람이 이직 후 일정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하는 급여
- 실업기간에 대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 가입기간으로 추가산입하는 제도이므로 국민연금 제도의 가입은 별도로 확인 처리해야함

2. 제도 안내

- (1) (지원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 다만 재산세 과세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지원 제외
- (2) (지원방법) 인정소득 기준으로 산정한 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납부하는 경우에 나머지 보험료인 75%를 지원
 -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로 하되 최대 70만원을 넘지 않음
 - 예를 들어 인정소득 70만원인 경우 연금보험료는 63,000원이고 본인이 15,750원을 납부하면 나머지 47,250원을 지원

$$\text{연금보험료} = \text{본인부담}(25\%) + \text{지원}(75\%)$$

- (3) (지원기간)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최대 1년(12개월)까지 지원
 -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120~270일(월로 환산시 4~9개월)
- (4) (신청장소 및 신청기한)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센터
 - 고용센터에 실업신고 하는 경우 또는 실업인정신청 시 실업크레딧도 함께 신청 가능하며, 구직급여 수급인정을 받은 사람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음

